

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관세사법」 시행령 제10조(시험의 시행 및 공고)에 따라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9일

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1. 최소합격인원

○ 2023년도 제40회 관세사 제2차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90명임

2.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

구 분	원서접수기간 (1, 2차 시험 동시접수)	시험장소	시험 시행지역	시험일자	합격자발표
제1차 시험	'23. 2. 6(월) 09:00 ~ 2. 10(금) 18:00 [5일 간]	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	서울, 부산 대구, 광주 대전	'23. 3. 11(토)	'23. 4. 12(수)
제2차 시험		'23. 5. 19(금) 공고 예정	서울	'23. 6. 24(토)	'23. 10. 18(수)

※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원서접수기간이 같으며, **제1차 시험 면제자도 동일기간에 반드시 접수**하여야 함.

※ 빈자리접수기간: '23. 3. 2(목) 09:00 ~ 3. 3(금) 18:00 [2일 간, 선착순, 취소 및 환불불가]

※ 빈자리접수는 **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**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(**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**)

※ 시험과목의 일부면제자 경력서류 제출기간: '23. 2. 2(목) 09:00 ~ 2. 9(목) 17:00

※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[단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접수 가능]하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

※ 시험 시행지역은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

3.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

구분	교시	입실시간	시험시간	시험과목
제1차 시험	1교시	09:00	09:30 ~ 10:50 (80분)	① 관세법개론 (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) ② 무역영어
	2교시	11:10	11:20 ~ 12:40 (80분)	③ 내국소비세법 (부가가치세법 · 개별소비세법 · 주세법에 한함) ④ 회계학 (회계원리와 회계이론에 한함)

구분	교시	입실시간	시험시간	시험과목
제2차 시험	1교시	09:00	09:30 ~ 10:50 (80분)	① 관세법 (관세평가는 제외,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)
	2교시	11:10	11:20 ~ 12:40 (80분)	② 관세율표 및 상품학
	3교시	13:40	14:00 ~ 15:20 (80분)	③ 관세평가
	4교시	15:40	15:50 ~ 17:10 (80분)	④ 무역실무 (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포함한다)

- 법률·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“해당 시험일” 현재 시행중인 법률·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야 함
- 회계학 과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에 의거하여 출제 함
- 기활용된 문제, 기출문제 등도 변형·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음

4. 시험방법

- 제1차 시험 : 객관식 5지 선택형 (과목당 40문제)
- 제2차 시험 : 주관식 논술형 (과목당 4문제)

5.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가. 응시자격 : 없음

- ※ 단,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(23. 10. 18)기준 관세사법 제5조 각 호(제1호는 제외)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6조의3(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)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
※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사법 제5조 제1호 미성년자도 **시험응시 가능**하도록 「관세사법」개정(2019.1.1.시행)

※ 확인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당해 관세사 시험을 무효로 함

나. 결격사유(관세사법 제5조)

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사가 될 수 없음

- 1) 미성년자
- 2)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3)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4)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)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)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7) 「관세사법」 제29조 및 「관세법」 제269조부터 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「관세사법」 제30조 및 「관세법」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함
- 8)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※ 제1호 미성년자는 시험응시 가능, 최종 합격 시 성년이 된 시점 이후 자격증 교부
※ 관세사법 제5조 개정('18.1.1 시행)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 4), 5), 6), 8)호 개정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름 (관세사법 부칙 제3조)

6. 합격자 결정(관세사법 시행령 제13조)

- 제1차 시험 :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제2차 시험 :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

- 다만,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관세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
- ※ 상기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.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

7. 시험의 일부면제(관세사법 제6조 및 제6조의2)

가. 제1차 시험 면제

- 2022년도 제39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
-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
나.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

-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일반직 공무원으로 관세행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
※ 관세행정 경력산정 기준일 : **당회 원서접수 마감일(23.2.10)(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)**

- 면제되는 제2차 시험 과목(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)
 - 관세법(관세평가 제외,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)
 - 관세율표 및 상품학

※ 관세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**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경력에 의한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**

-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
-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다. 면제서류 제출기관

기관명	담당부서	주 소	우편번호	연 락 처
서울지역본부	자격시험3부	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	02512	02-2137-0553
부산지역본부	자격시험3부	부산 북구 금곡대로 41번길26	46519	051-330-1916
대구지역본부	자격시험1부	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	42704	053-580-2382
광주지역본부	자격시험1부	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	61008	062-970-1763
대전지역본부	자격시험1부	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1	35000	042-580-9137

<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대상자 유의사항>

- 제출기간 : '23. 2. 2(목) 09:00 ~ 2. 9(목) 17:00까지
 ※ 증빙서류제출 심사 후에만 원서접수가 가능하므로 증빙서류는 2.9(목) 17:00까지 제출 (등기우편으로 접수 시 2.9(목) 17:00까지 도착분에 한함)
- 제출서류 : ① 관세행정 경력증명서[소속 기관장 발급, 근무 부서 및 기간이 표기될 것
 ② 관세사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(공단 소정양식)
- 제출서식 : 서류심사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세사 홈페이지 (이하 '관세사 홈페이지'라 함, www.Q-Net.or.kr/site/customs)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
- 제출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- 시험일부면제 대상자는 경력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관세사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customs)에서 응시원서 접수(단, 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 불가)
- 관세사시험의 시험일부면제를 위한 유효한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 제출한 경우 별도 서류제출없이 응시원서 접수 가능(단, 동일한 면제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- 관세행정 경력서류 제출자의 시험일부면제 대상여부는 경력심사(한국산업인력공단) 및 확인.검증(관세청)절차를 거쳐 결정되며, 일부면제 요건 미충족시 시험의 일부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, 접수가 취소(수수료 환불 불가 및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불가)

<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원서접수 안내 >

-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별도 서류 제출없이 제1차 시험 면제자(제2차 시험만 응시)로 인터넷 원서접수 가능
 ※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도 반드시 원서접수기간내에 접수하여야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짐
-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2023년도 제40회 제1차 시험 재응시를 원할 경우 인터넷 원서접수시 제1차 시험 재응시자로 선택
 ※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가 1차 시험 재응시자로 접수하여 금회 제1차 시험에 불합격(결시포함) 하더라도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에 근거하여 금회 제2차 시험에 응시가능

8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'23. 2. 6(월) 09:00 ~ 2. 10(금) 18:00(1·2차 동시 접수)

※ 빈자리접수기간: '23. 3. 2(목) 09:00 ~ 3. 3(금) 18:00 [2일 간, 선착순, 취소 및 환불불가]

※ 빈자리접수는 정기접수 환불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만 이루어져 조기 마감될 수 있음(빈자리접수기간에는 면제서류 제출 및 심사불가)

※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[단, 원서접수 마감일은 18:00까지 접수 가능하며,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]

※ 제2차 시험 응시자(시험의 일부면제자)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

나. 접수방법

○ Q-Net 관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(<http://www.Q-Net.or.kr/site/customs>)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

※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(공단지부·지사)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

※ 단체접수는 불가

○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(3.5cm×4.5cm)을 파일(JPG·JPEG 파일, 사이즈: 150 X 200 이상, 300DPI 권장, 200KB 이하)로 등록(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)

○ 수험자는 접수완료(수수료 결제) 후,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여부를 확인

다. 수수료 납부

○ 응시 수수료 : 20,000원

○ 납부방법 : 전자결제(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) 이용

※ 가상계좌는 접수완료 시점이 13시 이전은 당일 14시까지 입금완료, 13시 이후는 익일 14시까지 입금완료 해야 함(지정시간까지 미입금 시 원서접수가 취소됨)

※ 접수마감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가상계좌 결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만 가능

라. 수수료 환불

구분	환 불 기 준
100% 환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(과오납 금액분만 환불)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
60% 환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
50% 환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1차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
환불 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시험 결시자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
<p>*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	

※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(www.Q-Net.or.kr/site/customs)

“마이페이지” 에서만 가능

※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·조부모·형제·자매, 배우자,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%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(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)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% (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)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국가(공공기관 포함)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, 격리대상자로 판정(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)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%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, 외출 등이 금지되어(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)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% (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)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% (재난문자, 경찰서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첨부) <p>☞ 시험 시행일 이후 환불을 신청할 경우 큐넷 메인홈페이지 자료실 ⇨ 각종 서식에서 “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” 다운로드 후 작성 ⇨ 제출</p>

마. 수험표 교부

-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
-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(1,2차 공통사용)
- 수험표에는 시험일시, 입실시간, 시험장 위치(교통편),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

※ 「SMART Q-Finder」도입으로 시험전일 18: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

-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23. 5. 19.(금) 이후 수험표 재출력
(제2차 시험 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)

바. 원서접수 완료 후(결제완료 후) 접수내용 변경 방법

-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가 가능하나,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재접수 및 접수내용 변경 불가

사. 수험자 응시편의 제공

-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
 -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
 -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,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, 상지장애로 구분
 -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(의료법 제3조) 의사진단서 제출(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
-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(병원급 의료기관)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소견서 포함,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)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(임산부는 의원급·병원급 임신확인서 제출 시 인정 가능,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)
- 기타,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'아.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' 참고

〈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〉

1.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
2.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(불편사항) 등
3.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4. 진단서 유효기간
 - 유효기간이 기입되지 않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
 - 단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, 의사진단서에 따름

※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아. 유형별 편의제공 적용 기준

<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 >					
장애유형		편의구분	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	작업형 실기시험	제출서류
시각 장애	중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7배 연장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음성지원컴퓨터 - 문제지대독 - 점자 문제지 - 확대 문제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- 문제지대독	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 - 확대 답안지 - 점자 답안지 - 점자정보단말기 -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경증 (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문제인지 방법	- 확대 문제지 -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※ 상기 항목 중 택1	해당 없음	
		답안작성 방법	- 확대 답안지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뇌병변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 간격 조정)	해당 없음	
지체 장애	(1) 상지 중증 (장애정도가 심 한 장애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5배 연장	- 시험시간 1.3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(2) 상지 경증 (장애정도가 심 하지 않은 장애 인)	시험시간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- 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작성 방법	- 답안대필	해당 없음	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	해당 없음	
	(3) 하지 (장애정도 구분 없음, 척추장애 * 포함)	시험시간	- 일반 수험자와 동일	- 시험시간 1.1배 연장 ※ 단, 시험 중 이동이 있거나 서서 작업하 는 종목에 한정	①,②,③호 중 하나
		기타	- 별도 시험실 배정 (좌석 간격 조정)	해당 없음	

	(4) 복합장애 [상지+하지]	시험시간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- (1) 또는 (2)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+ (3)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답안 작성방법 및 기타	-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	해당 없음	
청각 장애	장애 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보청기 사용 -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-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- 별도 시험실 배정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	장애정도 구분 없음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①,②,③호 중 하나
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	일시적 신체장애	편의제공 사항 전반	-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		④호
	과민성대장증후군, 과민성방광증후군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
	임신부	기타	-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(횟수 및 시간) 없음		④,⑤호 중 하나

※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※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(장애정도 표기 필요, 소견서 불인정)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

※ 제출서류

-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(명서)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1부.
-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(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) 각 1부.
-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.
-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1부.
-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(소견서 불인정, 유효기간 필요) 원본 1부.
- ⑤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1부.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복합장애인 중 손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(예시)

- 시험시간이 60분인 경우(지체장애 중증상지장애① + 하지장애③ 작업형 시험 적용 시)
⇒ ①의 장애 정도에 부여한 시간[표준시간(60분) + {(60분)*0.3}=78분]
+ ③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[(60분*0.1)=6분] = 84분

자. 시험시행기관

- 제1차 시험 : 서울 · 부산 · 대구 · 광주 · 대전지역본부
- 제2차 시험 : 서울지역본부
- ※ 기관별 주소, 전화번호 등은 “5페이지의 면제서류 제출기관” 참조
- ※ 시험시행지역은 원서접수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

9.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

가. 기간 : '23. 3. 11.(토) 14:00 ~ 3. 17.(금) 18:00 <7일간>

나. 방법 :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및 접수

- ※ 제2차 시험은 가답안을 공개하지 않음
- ※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,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같음

10. 제2차 시험 시험장소 안내

가. 일시 : '23. 5. 19.(금) 09:00

나. 방법 :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

11.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

가. 합격자 발표

- 제1차 시험 : '23. 4. 12.(수) 09:00
- 제2차 시험 : '23. 10. 18.(수) 09:00
- 발표방법
 -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(<http://www.Q-Net.or.kr/site/customs>) [60일간]
 - 자동안내전화 : 1666-0100 [4일간]

나.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

- 큐넷 관세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customs) 신청 및 발급

다. 자격증 교부

- 발급기관 : 관세청
- 신청방법 및 발급절차
 -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

12. 수험자 유의사항

【 제1·2차 시험 공통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·위조·기재오기·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.

※ Q-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

※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

2.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(단,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),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, 수험포,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.

※ 매교(차)시 **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**

※ 수험자 입실완료시간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

※ 신분증 인정 범위

- (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) ①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(유효기간 이내인 것) 및 정부24·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), ② 운전면허증(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,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, ③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, ④ 여권, ⑤ 공무원증(장교·부서관·군무원신분증 포함), ⑥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(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), ⑦ 국가유공자증, ⑧ 국가기술자격증*(정부24, 카카오,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) *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, ⑨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(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)
- (초·중·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) ①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증(사진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된 것), ② NEIS 재학증명서(사진(컬러)·생년월일·성명·학교장 직인이 표기·날인되고,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) ③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, ④ 청소년증(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), ⑤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- (미취학 아동)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“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”, ② 국가자격증(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)
- (사병(군인)) ①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
- (외국인) ① 외국인등록증, ②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, ③ 영주증

※ 신분증(증명서)에는 사진, 성명, 주민번호(생년월일), 발급기관이 반드시 포함(없는 경우 불인정)

※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, 녹화·촬영본, 복사본 등은 신분증으로 불인정

※ 신분증미지참자는 응시 불가

3.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
4.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.
 - ※ '시험포기각서'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재입실·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(0점)처리
 - ※ 단, 설사/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,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
5. 결시 또는 기권,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 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6.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(답안지)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(답안지)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7.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,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8.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관세사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 될 때에는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.
9.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,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 - ※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,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
 - ※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,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
10.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(SD카드 포함)를 제거, 삭제(리셋, 초기화)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.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 - ※ 단, 메모리(SD카드포함)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
 - ※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

(초기화 이후 세팅) 방법숙지

11. 시험시간 중에는 **통신기기 및 전자기기**[휴대용 전화기,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(PDA),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(PMP), 휴대용 컴퓨터, 휴대용 카세트, 디지털 카메라, 음성파일 변환기(MP3), 휴대용 게임기, 전자사전, 카메라펜,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, 스마트워치 등]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, **금속(전파)탐지기**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**장비를 소지·착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당해시험을 정지(퇴실) 및 무효(0점) 처리하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.**

※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

12.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없거나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,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13.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,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
14.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15. 기타 시험일정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.

【 제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답안카드에 기재된 '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2.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(유의사항)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,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형별을 마킹하여야 합니다.
3.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 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. 답안 마킹 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**동일한 번호에 마킹**하여야 합니다.

※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

4. 답안카드 기재·마킹 시에는 반드시 **검은색 사인펜**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
※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

5.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(검은색 사인펜 미사용) 수험자의 부주의(답안카드 기재·마킹 착오, 불완전한 마킹·수정, 예비마킹, 형별 마킹 착오 등)로 판독불능,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
※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,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(단,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)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

※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

【 제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】

1. '23. 5. 19(금) 관세사 홈페이지(www.Q-Net.or.kr/site/customs)에 제2차 시험 장소를 공고할 예정입니다.

2.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'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'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수험자 인적사항·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여 합니다.(그 외 연필류,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)

※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

※ 지워지는 펜 사용 불가

4.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,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.

5. 답안 정정 시에는 정정부분을 두 줄(=)로 긋고 다시 기재 또는 수정 테이프 사용이 가능하며, 수정액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★ 관세사 자격시험의 엄정·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,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홈페이지(<http://www.Q-Net.or.kr/site/customs>)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(☎1644-8000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수험자 유의사항은 원서 접수 후 수험표 출력 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